

교수창업운영위원회 규정

전문제정 2020.04.23. 개정 2022.03.04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) 교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기능)

교수창업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교수의 창업활동 승인여부 심사 및 평가
2. 창업기간의 조정·연장에 관한 심사
3. 창업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
4. 창업교수 및 창업회사의 기부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수의 창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3.04.>
- ② 위원은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창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4조 (임기)

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.

제6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산학협력센터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7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

한다.

제8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04.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 부터 시행한다.